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 변경 대비표

1. 대상 펀드 :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주식)
2. 변경 대상 :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3. 변경 사유 :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집합투자규약	①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 ② 종류형 수익증권 신설(종류 A, 종류 Ae, 종류 A-G) ③ 환매수수료 삭제 ④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일괄신고서	①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전환 ② 종류형 수익증권 신설(종류 A, 종류 Ae, 종류 A-G) ③ 환매수수료 삭제

4. 효력 발생(예정)일 : 2020년 3월 26일

5. 세부 변경 사항 :

◆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내용 개정		
펀드명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주식)	신영마라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생략>	종류 A: D3668, 종류 Ae: D3669, 종류 A-G: D367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 생략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 생략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생략 <신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5. 생략 6. 모자형 ④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영마라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3조(집합투자)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

<p>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p>	<p>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 <생략> 10~12. <신설></p>	<p>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 <생략> 10. 종류 A 수익증권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1. 종류 A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2. 종류 A-G 수익증권 :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p>
<p>제3조(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p>	<p><신설></p>	<p>④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영마라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한다.</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1. <생략> 12. <신설> 13. <신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9. <생략> 10. 종류 A 수익증권 11. 종류 Ae 수익증권 12. 종류 A-G 수익증권</p>
<p>제16조(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국내 지분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이 투자신탁은 제3조 제4항의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11 <삭제></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 제3조 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p> <p>2.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10 <삭제>	<p>1. 제3조 제4항 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90%이상으로 한다.</p> <p>2. 제17조 제2항 각 호 방법으로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p>① 다음 각호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③<삭제></p>	<p>① 다음 각호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③<삭제></p>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1~8 <삭제>	<p>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 ③항 <삭제></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제25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하고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한 당일에 모두 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환매업무)	<p>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⑧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①~②<생략></p> <p>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u>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두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u></p> <p>⑧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u>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두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u></p>
제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p>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u>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제28조(환매연기)	<p>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p>	<p>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p>

	<p>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⑦ <생략></p>	<p>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u>또한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한다.</u> ③~⑦ <생략></p>
제39조(보수)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9. <생략> <u>10~12. <신설></u></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9. <생략> <u>10. 종류 A 수익증권</u> 가.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60 나.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0 다.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라.일반사무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u>11. 종류 Ae 수익증권</u> 가.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60 나.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0 다.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라.일반사무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u>12. 종류 A-G 수익증권</u> 가.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60 나.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30 다.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라.일반사무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p>
제40조(판매수수료)	<p><u>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삭제></u></p>	<p>① <u>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u> ② <u>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u> 1.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 이내 2.종류 C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3.종류 W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4.종류 e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없음</p>

		<p>5.종류 Cy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없음</p> <p>6.종류 I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없음</p> <p>7.종류 C-P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없음</p> <p>8.종류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p> <p>9.종류 C-Pe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없음</p> <p>10.종류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p> <p>11.종류 C-G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없음</p> <p>12.종류 C-P2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없음</p> <p>13.종류 C-P2e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없음</p> <p>③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의 원본액으로 구성되지 아니한다.</p>
제41조(환매수수료)	<p>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종류 C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p> <p>2.종류 W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p> <p>3.종류 e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p> <p>4.종류 I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p> <p>5.종류 C-P 수익증권 : 환매수수료 없음</p> <p>6.종류 C-P2 수익증권 : 환매수수료 없음</p> <p>7.종류 C-Pe 수익증권 : 환매수수료 없음</p> <p>8.종류 C-G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p> <p>9.종류 C-P2e 수익증권 : 환매수수료 없음</p> <p><삭제></p>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 적용한다.

◆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주식)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주식)
요약	저평가 가치주 위주로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	국내 저평가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로서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없음
본문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생략>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 D3668 Ae: D3669 A-G: D3670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신설>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생략>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A: D3668 Ae: D3669 A-G: D3670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생략>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생략> A(수수료선취-오프라인):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e(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G(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가입을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로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국내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조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추가>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관련 내용 추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수익구조 <추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관련 내용 추가
	제2부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가입자격 <신설>	제2부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가입자격 A, Ae, A-G 내용 추가
	제2부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제2부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p>(3) 환매수수료 <u><삭제></u></p>	<p>(3) 환매수수료 <u>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u></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u><신설></u>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생략></u></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u>A, Ae, A-G 추가</u> <u>환매수수료 삭제</u>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A, Ae, A-G 추가</u></p>